

# 육아정책소식

##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안, 본회의 통과

보건복지부(장관 문형표)는 4월 30일자 보도자료(2015년 4에서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고 밝혔다.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CCTV(폐쇄회로 텔레비전) 설치 의무화

-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, 앞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인가를 받으려면 CCTV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되었다.

### 2.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·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

-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혹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,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며, 이는 현행 10년간 제한된 규정보다 강화된 것이다.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, 아동학대를 한 원장이나 교사는 2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행 1년 자격정지 처분보다 강화된 기준이 마련되었다.

### 3. 보육교사 처우개선

- 보육교사 업무 과중화를 완화하기 위해 보조교사 배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 보육교사 업무 공백(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)이 생길 경우 대체교사 배치를 법률로 상향하였다. 또한 보육교직원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책무를 명문화 하였으며, 보육교직원 직무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 규정이 마련되었다. 마지막으로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의 불이익을 방지하고, 이를 위반한 원장에게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.

#### 4. 원장, 보육교사의 자격관리 및 교육 강화

- 보육교직원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, 해당 보수교육 내용에 아동학대 예방, 인성함양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.

#### 〈기타〉

- 보호자가 어린이집 환경, 보육내용 확인을 위해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는 부모 참여 보장 규정이 마련되었으며, 참관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2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였다.
- 영유아 보호자가 정보부족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보육료 지원 등의 지원 신청을 안내하는 비용신청의 고지 규정이 신설되었다.
- 가정양육수당 지원 받는 대상 중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동안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하도록 양육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마련되었다.

## 참고

###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안 개정 요지

-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·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새로 규정 (안 제7조제2항)
-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설치 의무화(보호자 전원이 설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,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의무 면제), 열람범위, CCTV 설치지원 근거 신설, 국가 및 지자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·운영 및 영상정보 열람실태 매년 1회 이상 점검 등 (안 제15조의4, 제15조의5, 제36조,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제4호)
-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2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지 못하도록 강화 (안 제16조)
- 보조교사, 대체 교사에 배치 규정을 신설 (안 제17조 제2항, 3항)
- 어린이집 원장,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, 인성함양 등의 교육을 포함 (안 제23조 및 제23조의2)
-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(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),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 (안 제25조)
- 보조금 부정 교부, 아동학대 행위 등 위법행위를 신고한 보육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 신설 (안 제42조의2)
-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강화(1→2년) (안 제46조 및 제47조)
-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 등의 위반사실 공표 의무화 (안 제49조의3제1항 및 제2항)
- 양육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시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 (안 제34조의2)